

경운대학교 커리어개발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진로탐색에서 진로결정 및 개발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커리어개발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재학생의 취업 및 진로 개발을 위한 역량 관리
2. 재학생의 경력 관리를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재학생의 진로 상담 및 지도
4. 각종 진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및 조정업무
5. KW-CDP운영 및 관리
6. K-MASTER 인증 마일리지제부여 제도 운영 및 관리
7.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2. 센터 운영성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 심의 작성
4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5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국고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7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